

이사회규정 개정(안)

제 정 1989.04.01.
개 정 1990.12.12.
개 정 1991.11.22.
개 정 1993.05.26.
1994. 8.10.(301부칙)
개 정 1998.02.17.
개 정 2001.05.04.
개 정 2001.12.27.
개 정 2003.01.09.
개 정 2003.06.25.
개 정 2004.03.26.
개 정 2005.03.16.
개 정 2006.04.19.
개 정 2009.02.11.
개 정 2010.03.31.
개 정 2012.07.18.
개 정 2013.03.13.
개 정 2014.03.20.
개 정 2015.03.19.
개 정 2016.02.18.
개 정 2019.06.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KT&G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기능) 이사회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매입·양도·처분, 대규모 자금의 차입, 이사의 선임·해임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4조(이사의 의무) ①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상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이사는 재직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이사는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구성) ①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
②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사장 또는 사내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 또는 사내이사의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회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내이사를 재적이사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④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사외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, 사외이사는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출석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지만, 의사정족수를 산정하기 위한 출석 이사의 수에는 산입한다.

⑤이사회는 이사회회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6조(의장) ①이사회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회 결의로 선임한다.

②삭제

③이사회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지 아니한다.

④이사회회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를 조율하며, 의장이 이사회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부의사항) ①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할 사항은 본조 제2항 각 호와 제15조 제1항으로 한다.

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 내 해당 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.

1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
- (3) 정관의 변경
- (4) 회사의 해산, 합병, 회사의 계속
- (5)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
- (2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사채의 발행에 관한사항
- (3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(4) 준비금의 자본전입 승인
- (5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, 소각에 관한 사항
- (6) 자본금 5%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- (7) 자본금 5%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
- (8) 자본금 10%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- (9) 자본금 10%이상의 고정자산 취득, 처분 결정
- (10) 자본금 5%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, 채무인수, 대여금, 면제
- (11) 자기자본의 25%이상의 차입
- (12)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익활동의 의결

3. 중요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중장기 종합경영계획의 승인
- (2) 기업이념, 비전, 철학 등 기업정체성에 관한 사항
- (3) 중요한 CI 제정 및 변경
- (4) 이사윤리행동 강령 및 기업윤리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
- (5) 이사회 의장의 선임
- (6) 위원회 위원의 선임
- (7) 사외이사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
- (8)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
(거래금액 50억원 이상)
- (9) 이사회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
- (10)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
- (11) 준법통제기준 수립·변경 및 준법지원인의 임면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(1) 사내이사 경업승인
- (2)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
- (3) 상법에 규정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

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, 관계 법령 및 정관상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

③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가 참여할 수 없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3호의 동의에는 사장이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.

1.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
2. 사장과 체결한 경영계약 이행여부의 평가와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
3. 사장 또는 사장후보의 사내이사후보 추천과 사장의 사내이사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
4.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
5. 기타 관계 법령·정관 및 사장의 경영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사항

④이사회는 제2항 각 호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 범위 내의 사항을 사장에게 위임하여 결정·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중간결산 결과
2. 위임사항 중 중요 사항
3. 최근 경영상황과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요구한 사항

⑥제2항 각 호의 의결사항 중 예산 승인시에 포함된 사항이나 중장기 경영계획 등에 의해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항은 제외한다.

제8조(부의절차) ①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의결사항, 보고사항 및 협의사항으로 구분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은 제9조제2항이 규정하는 회의개최일 9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소집절차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하며,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.

②간사는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(전자우편 또는 팩스 포함) 또는 구두로 소집내용을 통보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0조(의사 및 결의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, 사장 및 사내이사의 해임건의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사외이사 재적원 수의 3분의 2 찬성으로

하고,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및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시에는 이사 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당해 안건의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한다.

④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의사록)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안건, 경과와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결의서 작성·통보) ①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이 결의되었을 경우에는 간사는 결의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②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자료요구권) ①사외이사는 최적의 의사결정 수행을 위하여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의 직무와 관련한 필요자료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사외이사는 사장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조사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자문) ①사외이사는 각 해당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②사외이사가 전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 배경, 내용,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위원회) ①정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둘 수 있는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지배구조위원회(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함)

- (1)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기준과 그 개선에 관한 사항
- (2) 정관, 이사회규정, 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지배구조관련 규정 제·개정안 사전심의
- (3) 사장 승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(4) 사장후보 육성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(5)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장후보자군 구성
- (6)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장후보 심사대상자 추천
- (7)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한 사장후보 심사기준 제안
- (8)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후보 심사기준 제안
- (9) 사내이사후보 심사기준 결정 및 자격심사
- (10) 기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평가위원회 (3인 이상의 사외이사)

- (1)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과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
- (2)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
- (3) 사장후보와 체결할 경영목표 등에 대한 계약조건 결정
- (4)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

- (5) 사장의 요청에 의한 경영계약서상의 경영평가지표와 가중치의 변경에 대한 의결
- (6) 사장의 경영평가 및 보상에 대한 의결
- (7) 사장의 계량 및 비계량지표 실적의 점검 및 조정

3. 경영위원회(2인 이상의 사내이사)

- (1) 종업원·소비자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
- (2) 법적·제도적 주요 경영리스크 점검 및 대책 수립
- (3) 지점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대한 의결
- (4) 500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(단, 자본금의 10% 이상은 이사회 의결)
- (5) 5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(단, 자본금의 10% 이상은 이사회 의결)
- (6) 2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(단, 자본금의 5% 이상은 이사회 의결)
- (7) 200억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(단, 자본금의 5% 이상은 이사회 의결)
- (8) 100억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, 채무인수, 대여금, 면제(단, 자본금의 5% 이상은 이사회 의결)
- (9)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차입(단, 자기자본의 25% 이상은 이사회 의결)
- (10) 주식관련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및 주주명부 폐쇄에 관한 사항
- (11) 주요 성장사업의 발굴
- (12)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점검 및 리스크관리
- (13) 사회공헌활동의 발굴 및 예산승인시 포함되지 않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사회공헌활동 의결(단, 10억원을 초과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)

4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함)

(1)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추천

(2)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인 임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사전심의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장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. 단,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.

④ <삭제>

⑤ 제15조에서 정한 이사회 내 해당 위원회는 사내이사 후보 자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장 또는 사장후보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만 자격을 심사한 후 사장 또는 사장후보에게 자격적합자만을 통보한다.

⑥ 제1항 각 호의 의결사항 중 예산 승인시에 포함된 사항이나 중장기 경영계획 등에 의해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항은 제외한다.

제16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호선으로 선임한다.

②정관상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정관상의 위원회”라 한다)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소속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위원회의 사외이사중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정관상의 위원회 및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

이사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회의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④제3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소집요구는 이사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는 위임받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의나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사전심의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정관상의 위원회 및 위원회의 부의절차와 소집절차, 의사 및 결의와 의사록 작성에 대해서는 제8조, 제9조제2항, 제10조, 제11조를 준용한다.

⑦이사회회의는 경영위원회 보좌기구로서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등) 이사회회의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이사회 회의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.

제18조(사외이사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) ①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견교환 등을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반기별로 1회씩 개최하며, 긴급히 논의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삭제

③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·주관하며, 필요시 회사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9조(경비 지급) ①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과 금액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<1989.04.01>

이 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0.12.12>

이 규정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1.11.22>

이 규정은 199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3.05.26>

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8.02.17>

이 규정은 199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1.05.04>

이 규정은 200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1.12.27>

이 규정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3.01.09>

이 규정은 200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3.06.25>

이 규정은 200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4.03.26>

이 규정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5.03.16>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6.04.19>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세칙의 폐지) 이사회규정시행세칙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.

부 칙<2009.02.11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0.03.31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2.07.18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03.13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03.20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03.19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6.02.18>

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06.13>

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제 차 이 사 회 결 의 서

의 결 자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의 장
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이 사	
의결일자	20 . . . (: ~ :)				장 소			
작 성 자								
의안번호	제 안 자	제 목					의결결과	
결 의 사 항								

210mm×298mm(인쇄용지 70g/m²)